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55
----------	------

발의연월일 : 2016. 11. 1.

발의자 : 손금주 · 장정숙 · 최도자
김광수 · 김관영 · 정인화
김중로 · 장병완 · 조배숙
김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공공기술을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술의 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나, 기술료의 부담으로 공공기술의 이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 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4조 제4항).

법률 제 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중 “있다”를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이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 ③ (생략)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으며,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있도록</u> <u>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료</u> <u>를 징수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이</u> <u>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u> <u>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u> <u>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u> <u>납부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u> <u>다.</u></p>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